규 약

* **2000년 7월 22일 제정 (창립총회)**
* **2002년 2월 23일 개정 (정기총회)**
* **2003년 3월 8일 개정 (정기총회)**
* **2004년 2월 21일 개정 (정기총회)**
* **2007년 4월 14일 개정 (정기총회)**
* **2016년 3월 26일 개정 (정기총회)**
* **2022년 5월 14일 개정 (정기총회)**

KT전국민주동지회

* 강 령

지난 백여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독재권력의 억압, 부패재벌의 수탈에

맞서 강고하고 끈질긴 투쟁을 이끌어온 이 땅의 노동형제들은 87년 노동

자대투쟁을 밑거름으로 탄생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남한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는 더 이상 변방의 존재가 아니라 민주화와 사회개혁,

민중권력의 핵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세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KT노조는 자본가 정권과 사측의 탄압에 의해 다시금 어용화

되었고 KT는 완전 민영화되고 말았다.

또한 초국적 자본에 의해 통신 주권은 심대하게 위협 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어용노조 타도, 민주노조 건설 그리고 KT를 비롯한

국가통신기간산업의 재 국유화를 이루어 공공성 확립에 이바지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사수와 노동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령을 채택하는 바이다.

- 우리는 KT를 비롯한 국가통신기간산업의 재 국유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 우리는 현장조직으로서 어용노조를 타도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 투쟁한다.

-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과 모든 민주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 우리는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 규 약**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민주동지회는 강령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민주동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수호하는 선진 노동활동 수행
2. 국가기간통신산업의 재 국유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활동

1. 강력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
2.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이의 긴밀한 교류 및 연대로 산별노조 건설
3. 현장조직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활동
4. 조합원의 의식향상을 위한 소식지 발행
5. 타 현장조직과의 연대 및 산별건설에 따른 현장조직 통합 활동
6. 사회민주화 진보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

제 4조(사무소)

 본 민주동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 내에 둔다.

제 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5조(회원자격)

 회원은 KT 및 자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원이 될 수 있다.

단, KT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자도 회원자격이 있다.

제 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 민주동지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회의 토론을 거친 후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와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단,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본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1. 민주동지회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민주동지회 활동에 관련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회의 및 대회시 의결권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민주동지회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준수한다.
2. 규약을 준수하고 민주동지회 활동과 관련된 기밀을 엄수한다.
3. 민주동지회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4. 민주동지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성실히 참여한다.

제 9조(후원회원)

 본 민주동지회는 민주동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 10조(기구)

 본 민주동지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회원총회
2. 전국대표자회의
3. 상임집행위원회

제 11조(회의의 성립)

 각종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의한다.

제 12조(회의진행)

 각종회의 의장은 민주동지회 의장이 되며 민주동지회 의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간부가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 1 절 회원총회

제 13조(구성과 기능)

 회원총회는 민주동지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의결 기능이 있다.

제 14조(소집)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

기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주동지회 의장이 소집한

다.

 1. 민주동지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소집을 결의한 경우

 3. 회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15조(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민주동지회 의장 선출
3. 본 민주동지회 해산
4. 사업보고 및 사업승인
5. 예산편성 승인 및 결산 승인
6. 임원불신임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전국대표자회의

제 16조(구성)

 전국대표자회의는 회원총회를 제외한 최고의 의결기구로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민주동지회 의장 및 지회장들과 상임집행위원들로 구성된다.(1인 지회나 지회장

이 선출되지 않은 지회는 상집에서 소집권자를 지명 전국대표자회의에 참석할수

있다.)

제 17조(소집)

 분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민주동지회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와 회원 및 전국대표자회의 구성의 1/5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을

요구한 경우 소집한다.(온라인회의 포함)

제 18조(의결사항)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심의

 2.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

 3. 후원회원관리 및 조직현황 보고

 4. 유관단체와의 연대 및 파견자 선출

 5. 기금 및 자산의 설치, 관리 및 처분

 6. 회원의 징계 및 사면복권 심의

 7. 민주동지회 운영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해산

 8. 민주동지회 대표의 직무대행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주동지회 운영

 제 3절 상임집행위원회

제 19조(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민주동지회 의장
2. 민주동지회 사무국장. 조직국장. 재정국장. 선전국장. 정책국장.

교육국장. 연대사업국장. 성평등국장. 추모사업위원회 담당.

수도권 지회장

제 20조(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민주동지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온라인 회의 포함)

제 21조(선출)

 상임집행위원회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1. 민주동지회 의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회원중에서 선출한다.(전자투표제 이용가능)

1. 민주동지회 국장은 회원중 민주동지회 의장이 임명한다.
2. 민주동지회 의장이 궐위시에는 전국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득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대표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 23조(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민주동지회 전반에 관한 일상업무를 진행한다.

제 24조(상임집행위원회의 임무)

1. 민주동지회 의장은 민주동지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1. 사무국은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사업준비를 한다.
2. 조직국은 각 지역 조직을 점검 관리하고 투쟁사업을 책임진다.
3. 선전국은 회원간 소통강화 및 회원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배포를 책임진다. 또한 조합원에게 배포할 선전물을

제작한다.

1. 연대사업국은 중앙단위의 연대는 물론 지역의 연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1. 재정국은 회비 등 민주동지회 재정을 담당한다.
2. 정책국은 민주동지회 사업, 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을 담당한다.
3. 교육국은 민주동지회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4. 성평등국은 민주동지회 조직내 성평등을 담당한다.
5. 추모사업위원회는 추모사업 담당을 두고 KT내 열사들의 추도식과

유족 지원사업을 하며, 특별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국은 필요한 경우 담당을 둘 수 있다.

제 4장 조 직

제 25조(구성)

 본 민주동지회 산하에 지회, 분회를 둔다.

제 26조(기구)

 지회, 분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제 1절 지 회

제 27조(구성과 기능)

 지회는 노동조합 지방본부 구역별로 구성하며 선출 및 의결기능이 있다.

 단, 지역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회의 신설, 연합 및 분리

에 관하여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8조(지회총회)

 지회는 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지회총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여 지회운영

에 관련된 선출기능 및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제 29조(운영위원회)

 지회는 지회장이 임명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월 1

회 이상 개최하여 상급조직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지회운영에 관한 일상

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지회 산하에 분회가 구성될 경우 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30조(선출)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회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및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31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지회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 2절 분 회

제 32조(구성과 기능)

 분회는 지회내부의 실정에 따라 구성하며 선출 및 의결기능이 있다.

 단, 분회의 신설, 연합 및 분리에 관하여는 전국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3조(분회총회)

 분회는 분회 회원으로 구성된 분회총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여 분회운영

에 관련된 선출기능 및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제 34조(운영위원회)

 분회는 분회장이 임명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월 1

회 이상 소집하여 상급조직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분회운영에 관한 일상

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35조(선출)

 분회장은 분회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분회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및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36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분회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제 5장 회비와 회계

제 37조(회계)

1. 민주동지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회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3. 특별회계는 사업수익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 38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민주동지회의 사업기금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9조(회비)

 민주동지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40조(회계년도)

 민주동지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상벌

제 41조(포상)

 민주동지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전국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42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한 자
2. 민주동지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3. 민주동지회 활동관련 기밀을 누설한 자
4. 회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
5. 회비, 기부금, 수익금 등을 횡령, 유용한 자
6. 회원의 의무를 위배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

제 43조(징계의 종류)

1. 경 고
2. 제 명

제 44조(징계절차)

1. 회원의 징계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징계시 징계기관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규약에 의해 징계된 자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사면 복권될 수 있다.

제 7장 해산

제 45조(해산)

본 민주동지회는 회원 2/3 이상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 46조(청산)

 본 민주동지회는 해산결정이 있는 즉시, 민주동지회 의장은 청산위원을

임명하여 회비 및 재정 청산안을 작성토록 하여 청산을 개시한다.

제 8장 특별위원회

제 47조(구성)

 전국대표자회의는 민주동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간명의 특별위원과 특별위원장을 임명하여 특별위원회를 발족,

운영할 수 있다.

 제 48조(운영)

 특별위원회는 민주동지회의 직접적인 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민주동지회의 결정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만 발족, 운영되고 해산된다.

부 칙(2000. 7.22)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2000년도에 선출된 민주동지회 의장, 지회장, 분회장의 임기는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2. 2.23)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8)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21)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14)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26)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 약의  미비한  점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22. 5.14)

제 1조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